

# 안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8-423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. 8. 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## 제안이유

-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·조정하기 위한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 17조의 2(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등) 신설
-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

##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1조·제2조)
-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)
-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, 단장의 임무, 실무팀 편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·제5조·제6조)
- 지원단 설치,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7조·제8조)
-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)

## 제정조례안 : 붙임1

## 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2

##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## 예산수반사항 : 붙임3

## 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20. 4. 29. ~ 5. 19.(20일간)

## 기타 참고사항

- 방침결정문 : 붙임4

## 안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시장의 책무)** 안산시장은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 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,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**제3조(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·운영)**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6조제2항에 따른 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“지역대책본부”라 한다)의 본부장(이하 “지역대책본부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(이하 “지원단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한다.

**제4조(구성)**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지원단의 단장(이하 “단장”이라 한다)은 「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에 따른 안산시 자원봉사센터(이하 “자원봉사센터”라 한다)의 장과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.

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·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.

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.

1.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안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소속 공무원
2. 자원봉사센터의 직원
3.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
4.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

**제5조(단장의 임무)**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.

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,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.

**제6조(실무팀의 편성)**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.

1. 상황 총괄팀
  2. 모집·배치팀
  3. 활동관리팀
  4. 활동지원팀
  5.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
-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, 재난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**제7조(지원단의 설치)**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.

1.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
2. 「재해구호법」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
3. 자원봉사자의 규모
4.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
5.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

**제8조(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)**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.

② 지역대책본부장은 「안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」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필요시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할 수 있다.

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

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

**제9조(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)**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 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.

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,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, 자원봉사활동의 사진·영상,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과		자치행정과
임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자치행정과장 안 성 영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민간협력팀장 문 숭 성
	담당자 성명·전화	정재은 (행정 3098)

## [별표 1]

### 지원단 운영 표준 편제(제6조제2항 관련)



## [별표 2]

### 지원단 운영 표준 업무 구성(제6조제2항 관련)

< 직무분담표 >

팀명	성명(직위)	담당 사무
단장	공무원 (안산시 자원봉사 담당부서의 장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행·재정 지원 사항 총괄</li> </ul>
	민간인 (안산시 자원봉사센터장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재난 현장 운영 총괄</li> </ul>
상황총괄팀	000 (자원봉사 업무 담당 팀장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지원단 관련 행·재정 지원</li> <li>▶ 지역대책본부와의 연계(상황 공유·보고 등)</li> </ul>
	000 (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재난 현장 자원봉사활동 총괄</li> <li>▶ 자원봉사활동 수요 파악</li> </ul>
	000 (자원봉사센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피해 현황 파악</li> </ul>
모집· 배치팀	000 (자원봉사센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자원봉사자 모집·등록·교육·배치 관련 사항 총괄</li> </ul>
	000 (자원봉사센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자원봉사자 모집·등록·교육·배치 관련 사항 지원</li> </ul>
활동관리팀	000 (자원봉사센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재난 현장 자원봉사자 안전 관련 사항 총괄</li> <li>▶ 자원봉사자 활동 관리, 모니터링</li> </ul>
	000 (자원봉사센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자원봉사 활동 관련 물품·장비 소요 파악</li> <li>▶ 자원봉사 활동 홍보</li> </ul>
	000 (대한적십자사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피해복구활동 및 구호품 지원</li> </ul>
활동지원팀	000 (자원봉사센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자원봉사 활동 관련 물품 지원</li> <li>▶ 자원봉사자 급·간식 및 편의시설 지원</li> </ul>
	000 (자원봉사센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봉사활동 인정(시간 인정, 기부금 확인서 발급 등)</li> </ul>
	000 (대한적십자사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자원봉사 활동 관련 물품 지원</li> </ul>

-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팀은 단장이 지역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직위 및 담당 사무를 정한다.